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11. 25 선고 2021가단39453 판결 [전세보증금반환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지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1. 4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0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박성만

별지